

충주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계획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은 건강한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공공병원을 목표로 공공의료 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우수한 공공간호사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충청북도충주의료원장

1 선발대상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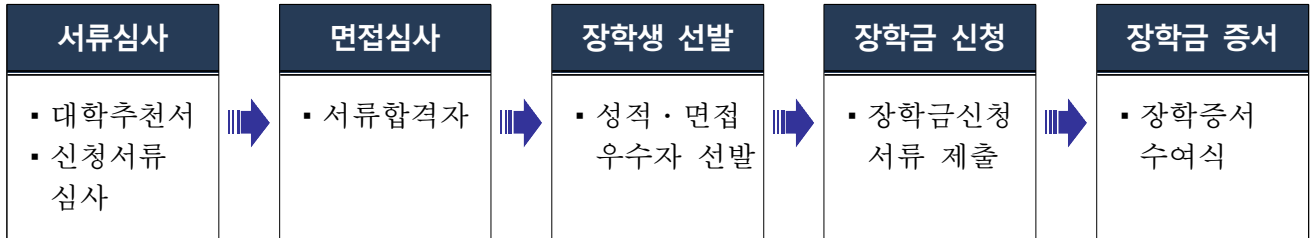
선발분야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선발 대상
	장학금	의무복무		
간호 장학생	800만원	충주의료원 2년	5명	지원조건을 충족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2 지원조건 (아래 지원 조건 모두 충족자)

- 2026년도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 대학교 간호학과 학과장 추천 재학생
- 전체 학기 평점 평균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인 자
- 대학 졸업 후, 충주의료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의무복무 2년 가능자**
- 군필자 또는 면제자(남학생에 해당)
- 충주의료원 인사규정에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충북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 ※ **거주 미충족자 : 전입 및 2년 이상 거주 약약서 지원 가능**
- 본 사업과 유사한 장학사업(의무복무)에 수혜를 받지 않은 자

3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선발절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심사
- 본원 인사규정 제18조 및 선발계획공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면접시험

- 창의력, 발전성, 인성, 직업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4 제출서류 [붙임 서식 참조]

- 장학생 선발 신청서 1부 [서식 1]
 - 자기소개서 1부 [서식 2]
 - 학과장 추천서 1부 [서식 3]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직전 학기까지의 전학년 성적, 백분율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 포함)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서식 4]
 - 주소 이전 확약서(거주 미충족자에 한함) [서식 5]
- ※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본 서류로 선발 후, 추가 제출 서류 있음.

5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제출기간 : 2026. 8. 3.(월) ~ 2026. 8. 24.(월) 17시까지
- 접수처 :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관리동 2층 총무팀
(27486)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총무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6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2026 8. 31.(월) 홈페이지 공고(예정)
- 2차 면접시험 : 2026. 9. 8.(화)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14.(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모든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개별 연락 및 공지

7 전형기준

- 면접전형 평정요소 및 채점방법
 - 평정요소
 -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업무추진능력
 -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상(3), 중(2), 하(1)로 평정
- 최종합격자
 - 면접채점점수의 총점이 100점기준 변환시 60점 초과자 중 고득점 자

- 동점인 경우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면접 평정요소 중 업무추진능력 및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합산한 점수가 높은자 → ③필기시험 고득점자 → ④경력기간이 긴 순 → ⑤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순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평정점수와 무관하게 불합격으로 처리함

○ 예비합격자

- 장학생 선발 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순에 의해 추가선발

8 장학금 지급방법

-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의무복무 서약서 등 신청서류(5종)를 제출 후, 장학생 통장(본인 명의)계좌로 지급
- 장학금 신청서류(5종)
 - 충주의료원 공공간호사 장학금 신청서 1부
 - 의무복무서약서 1부
 - 재정정보증서 1부
 -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거주 미충족자의 경우 확약서 제출)
- 장학금 증서 수여 :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및 수여
- 장학금 : 1인 800만원/년
 - ※ 재원분담비율 : 道(5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10%), 충주의료원(40%)

9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합니다.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의무복무 관련안내

- 의무복무 이행
 - 의무복무 서약서에 서약한 장학생은 장학금을 받은 후, **2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여야 함
 - ※ 졸업전 4학년생 대상 장학금 대상자 선정 후, 선정된 장학생 대상 지급조건에 따라 장학금 1회 지급
- 의무복무 유예
 - 장학생은 2회에 한하여 의무복무 유예 가능
 - 의무복무 유예 신청은 1회에 1년 이내로 최대 2년 초과 불가
 - * 졸업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휴학해야 하는 경우
 - * 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무가 어려운 경우
 - * 그 밖에 의료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의무복무 취소에 따른 처리
 - 의무복무가 불가능한 경우(질병, 변심 등) 장학금 반환기준
 - * 입사 전 :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 장학금 전액 반환
 - * 입사 후 :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장학금 전액 반환

11 장학금의 반환

○ 장학금 전액 반환 대상 및 조건

- 퇴학 또는 제적,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유예된 자
-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과(科)로의 전과(轉科)
- 장학생 유예인정 기간 초과자
-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졸업 당해연도 이내에 간호사면허 미취득자 및 면허가 취소된 자
- 의무복무(2년) 이행 미준수 또는 취업후 1개월 이내 주소를 옮기지 않은자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규정 〉

❖ 제12조(지급 중지 및 반납) ①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및 연수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기 지급된 장학금 및 연수비는 회수할 수 있다.

1. 소속 학교에서 퇴학,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3. 재단의 장학생 및 연수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장학생 및 연수생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5.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금 및 연수비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의료법 제8조 〉

-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 인사규정 〉

- ❖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신설 2019.6.25.>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4.12.23.>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3.6>

12 공공간호사 장학금 모집공고 문의

- 문의 : 충주시 안림로 239-50, 충주의료원 총무팀
☎ 043-871-0422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